



# 종헌종법

단기: 4356년 01월 01일

불기: 2567년 01월 01일

서기: 2023년 01월 01일

**(財團法人) 大韓佛教 佛神道**

**(재단법인) 대한불교 불신도**



# (재단법인) 대한불교 불신도

## 종헌

### 제1장 증명 및 종지

#### 제1조

본종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불신도 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불절한 것이다.

#### 제2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 제3조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 제2장 본존, 기원 및 사범

#### 제4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 제5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의 기원을 단기 1789년(서기 기원전 544년)으로써 기산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기원을 단기 2705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으로써 기산한다.

#### 제6조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조사의 증법손 서당 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계 승승한다.

제7조 본종의 법맥상승은 사자간의 입실면수 또는 전법계의 수수로써 행한다.

### 제3장 종단

#### 제8조

본 종은 승려(남여), 신도(남여)로써 구성 한다.

#### 제9조

본 종 승려는 실질적으로 사암(寺庵)에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라야 한다.

본 종 승려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계첩(戒牒)을 수지(受持)한 자라야 한다.

본 종의 승려는 삭발과 유발로 구분한다.

본 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종단에 사암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자상속(상자 및 친자)을 인정하되 상자 및 친자이외의 자산상속은 종단에 증여한다.

제9조 각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10조

본 종 신도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 종 수계를 수지하고 각 사암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본 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자라야 한다.

제11조 본 종 승려 및 신도의 권리와 의무, 의제(衣制)는 종법으로 정한다.

### 제4장 의식과 법회

#### 제12조

본 종의 의식은 불조의 유훈과 전래된 예법에 의해 행한다.

#### 제13조

본 종은 항례법회(恒例法會)와 임시법회를 행한다.

#### 제14조

본 헌의 제13조의 항례법회와 임시법회를 종법으로 정한다.

## 제5장 계단(戒壇)

### 제15조

계단은 전계를 행한다.

### 제16조

계단은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본 계단과 각 교구에서 실시하는 계단으로 구분한다.

### 제17조

각 계단의 설치 및 전계사는 종법으로 정한다.

### 제18조

본 종의 수계구분과 수계사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19조

본 종의 종정은 본 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본 헌  
제20조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行解) 원만한 승려로서 종단에서 실시하는 대종사  
법계 이상의 법위를 득한 자라야 한다.

승납(僧臘) 30년 이상

년령 60세 이상

법계(法階) 대종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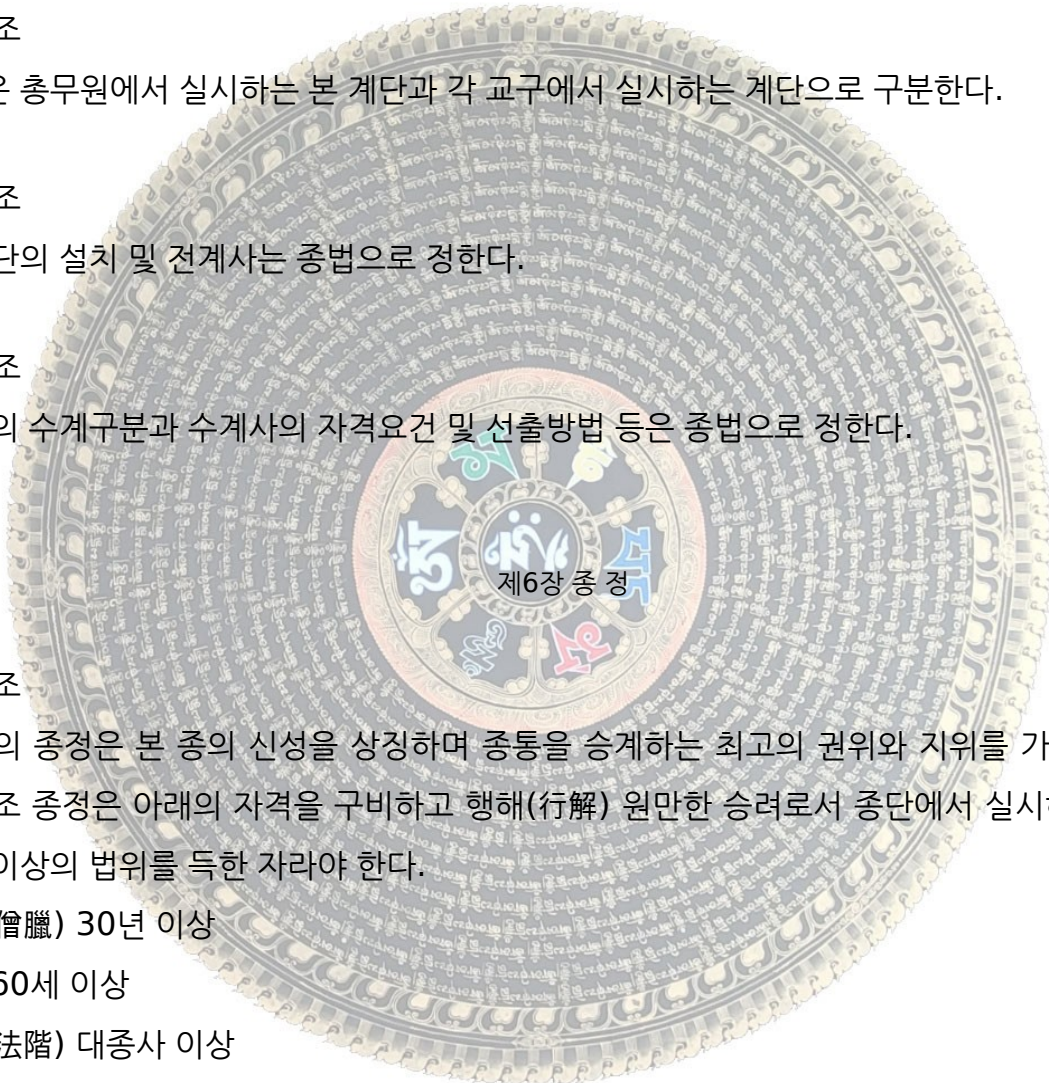
### 제20조

종정은 장로원(長老院)의 원장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이 추천하며, 추대위원회와 추대 방법  
등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21조

종정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



종정은 전계대화상의 위촉권과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징계의 사면 및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 제23조

종정은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24조

종정에 대한 예경과 의전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경실을 둘 수 있다.

## 제7장 장로회의(長老會議)

### 제25조

장로회의는 5인 이상 19인 이내로 종정자격을 갖춘 원로승려(元老僧侶)로서 구성한다.

제26조 장로회의 의원 선출 및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8장 중앙종회(中央宗會)

### 제27조

본 종은 입법기구로서 중앙종회를 둔다.

### 제28조

중앙종회는 중앙종회 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3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9조

중앙종회의 세부사항은 중앙종회법으로 정한다.

## 제9장 총무원

### 제30조

본 종의 중앙종무행정 기관으로 총무원을 둔다.

제31조

총무원내에 각 부서를 두고 증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32조

총무원장의 선거 및 선출 각 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 권한자격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0장 교육원**

제33조

본 종은 교육원을 두어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설치한다.

제34조

교육원내에 각 부서를 두고 교육을 위한 각종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조

교육원장의 선거 및 선출 각 부서장의 임명 및 임기 등 권한자격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1장 포교원(布教院)**

제36조

본 종은 포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교원을 둔다.

제37조

포교원 내에 각 부서를 두어 포교를 위한 각종 포교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제38조

포교원장의 선거 및 각 부서의 설치와 임명 및 임기권한 등의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2장 호계원(護戒院)**

제39조

본 종은 사업기관으로 호계원을 둔다.

#### 제40조

호계원 내에 각 위원회와 부서를 두고 종단 내 기강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사정 및 감사, 징계, 변호를 할 의무를 가진다.

#### 제41조

호계원의 원활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와 자격부서의 조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13장 감사원

#### 제42조

본 종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매년 말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종단 비상시에는 각 원의 감사를 감사원을 통해 실시한다.

#### 제43조

감사원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각 부를 두며, 공정한 감사를 위해 종회의장이 추천 한 1인 감사원장이 추천한 1인을 대동하여 사고 각원의 감사를 기간 내에 실시한다.

제44조 감사원은 원활한 감사행정을 위하여 각 부서와 자격 부서의 조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법으로 정한다.

#### 제45조

감사원의 원장 및 임원 임무조직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14장 문화원

#### 제46조

본 종은 종단문화 발전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종단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화원을 둔다.

제47조 문화원의 원장 및 임원 임무조직 등 세부사항 종법으로 정한다.

## 제15장 수선원(修禪院)

### 제48조

본 종은 참선의 수행을 통해 정법을 호지(護持)하고 해명을 이루기 위하여 수선원을 설치 하여 운영한다.

### 제49조

수선원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부서 및 수선원 임원의 자격 및 임무를 부여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제50조

수선원의 원장 및 임원 임무조직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16장 신도회(信徒會) 및 신도단체(信徒團體)

### 제51조

본 종에는 전국신도회 및 교구신도회가 각 사암의 신도회를 둔다.

### 제52조

신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도단체를 구성하고 종단에 단체등록을 할 수 있다.

### 제53조

신도회 각 종 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록 등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17장 사회복지 활동

### 제54조

본 종은 사회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신문·출판, 방송 등 문화예술의 참여를 위해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한다.

### 제55조

본 종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각 기관의 원장 및 임원을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부서를 두어

사업을 실시한다.

#### 제56조

본 종은 본 헌 제17장 제54, 55조의 사업시행 및 운영의 원활한 기강을 위하여 사정에 따라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종법으로 정한다.

#### 제57조

사회복지활동은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등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는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된다.

### 제18장 재장 및 회계

#### 제58조

본 종은 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세우고 종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 제59조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은 종단 발전을 위한 사업 삼보 호지 및 종헌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제60조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매, 담보, 저당, 대여, 기부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 제61조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을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처분 및 기부 대여 등을 한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로 하며 행위자는 징계에 회부한다.

#### 제62조

총무원의 수입은 일반성금과 특별성금으로 정하며 일반성금은 본 종에 등록된 각 당·사·암의 분담금과 교무금으로 정하고 특별성금은 각 종 행사로 인한 수익금 및 기여금 기타 수익금으로 정한다.

#### 제63조

본 헌 제18장 제58조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15일한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거쳐 집행한다.

#### 제64조

모든 사찰 및 승려와 신도 그리고 본 종에 등록된 각 당·사·암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분담금과 교무금의 액수 방법의 책정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5조 각 종 종무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중앙총회의 결산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19장 포상 및 징계

#### 제66조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실행 한다.

#### 제67조

포상은 1, 문서표창장 1, 상품수여 1, 법지승급 등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제68조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행하며 제적, 법계감급, 공권정지, 면직, 문서경책 등이 있다.

#### 제69조

징계를 받은 자가 진실로 참회하여 선행을 쌓는 등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 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복권시킬 수 있다.

#### 제70조

상벌에 대한 절차 및 종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20장 종헌개정 및 제정

#### 제71조

중헌 개정, 제정, 제안은 총무원장 또는 중앙종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이 발의로 한다.

제72조

발의된 중헌 정정 및 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3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74조 총무원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중헌 정정은 당시의 총무원장에 대하여는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장 비구니원**

제75조

본 종은 여승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구니원을 설치한다.

제76조

비구니원은 비구니의 활동사항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비구니 전문수련 및 강호원을 설치하고 그의 행정을 위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77조 비구니원장 및 임원, 자격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2장 승려의 복장 및 신도의 복장**

제78조

- 1) 승려의 복장 : 승려의 복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복을 수한다.
- 2) 사미승의 복장 : 회색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장삼에 밤색 오조 또는 반가사
- 3) 법사, 비구승의 복장 : 황색장삼, 적색가사, 저고리, 두루마기
- 4) 포교사, 유발법사 : 사미승의 규정에 준한다.
- 5) 일반신도 : 회색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제79조

종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 합동법회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 의복을 수하여야 한다.

## 제23장 부칙

### 제80조

이 종헌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불신도 에서 종헌이라 칭한다.

### 제81조

이 종헌 시행 시에 참여하여 선출된 종정은 본 종단의 일세종조(一世宗祖)로 하며 종맥(宗脈)의 시조(始祖)로 존중한다.

### 제82조

이 종헌종법의 공포일 이후 종단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향후 10년 2027년까지는 종헌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른다.

### 제83조

본 종헌종법 제정공포 후 향후 10년 익월 익일까지는 종헌종법이 요구하는 승려의 자격 및 권리는 종전의 재적종단에서 적용한 규정에 준한다.

### 제84조

2050년 1월 1일까지의 임명자가 행한 모든 종무행위는 이 종헌종법에 의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5조

이 규범은 2023년 1월 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 (재단법인) 대한불교 불신도

## 종법

### 제1장 종단(宗團)

#### 제1조 (직제의 명칭)

종단은 다음의 각 원과 부서 직제를 둔다.

종정 : 부종정

장로의원장

종회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감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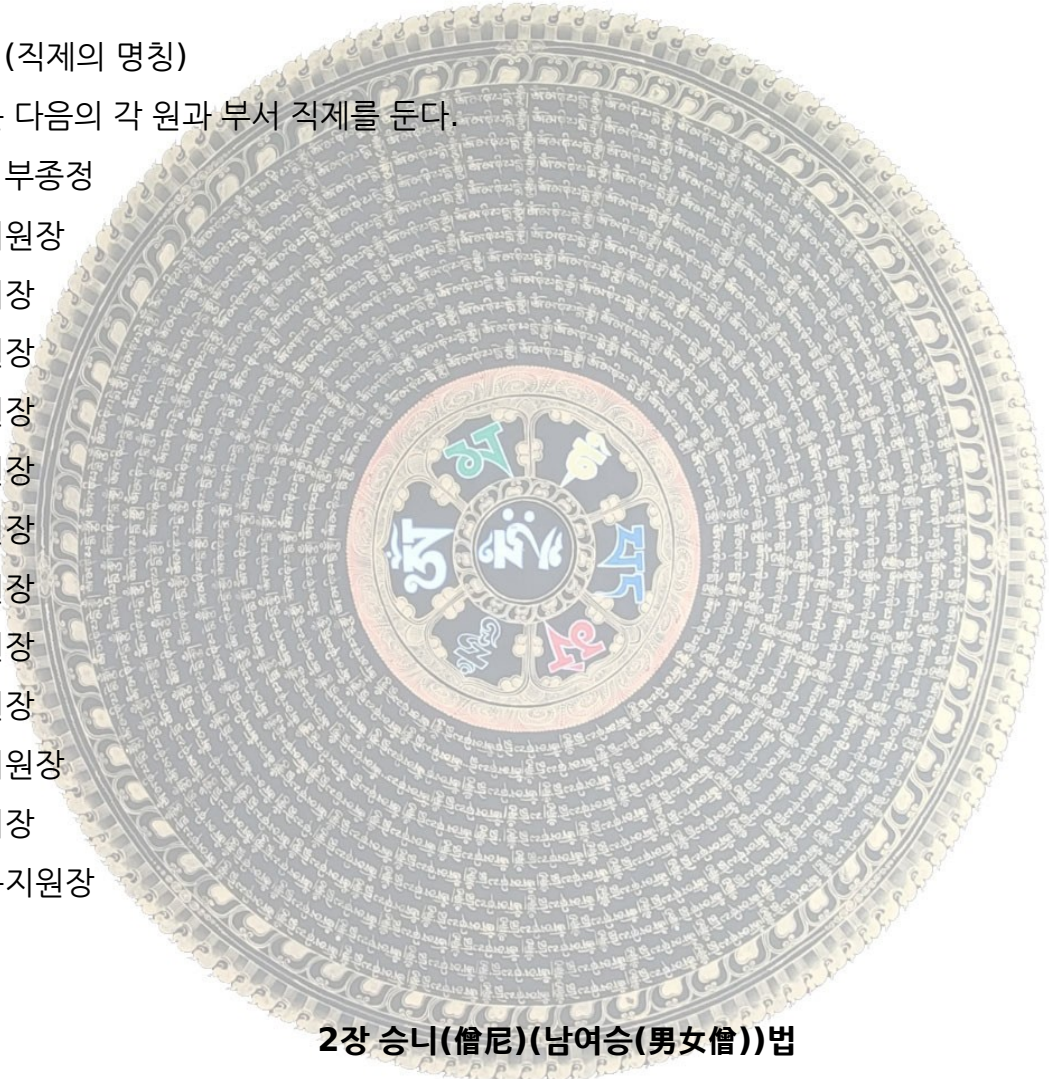
문화원장

수선원장

비구니원장

신도회장

사회복지원장



### 2장 승니(僧尼)(남여승(男女僧))법

#### 제2조

이 법은 종헌 제3장 각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법으로 정한다.

#### 제3조

본 종단의 승려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승려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기간 수행 을 거쳐 은사스님의 추천에 의하거나 중립학교의 과정을 거친 자로 성직자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제4조

본 종 승려는 종단의 계단에서 득도계 및 사미계, 구족계 및 법계를 통하여 도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승적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승적을 취득한 후 상구로서 하화중생하며, 전법에 진력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

본 종의 승려는 삭발승과 유발승으로 나누며, 삭발염의하고 종단에서 실시하는 법지시험에 합격하여 사찰에 상주하며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자로서 종지와 종풍을 이행하는 자를 비구, 비구니승이라 칭한다.

본 종은 유발자를 승려로서 인정하되 종단에서 실시하는 계단에 참여하여 일정한 교육과 수행, 수련을 통하여 법지고시에 합격하고 사설사함을 창건하여 실제로 운영과 제반의식을 실제로 봉행하는 자를 유발승려라 한다.

#### 제6조

본 종의 승려는 본 종에서 운영하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법계고시 또는 계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자로 한다.

### 제3장 승려의 자격

#### 제7조

승려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령 12세 이상인 자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구비한 자.

사내(寺內)에서 6개월이상 행자생활(行者生活)을 이수한 자.

불교의 각의법(各儀範) 및 사미율의(沙彌律儀)를 이수한 자.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상기 각항의 해당자라 하더라도 추천인이 없으면 안된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체상의 이상자, 정신상의 이상자는 본 종의 승려가 될 수 없다.

#### 제8조

본 종의 승려가 되려는 자는 본종에서 실시하는 득도 및 수계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사승(師僧)은 은사(恩師)와 전계사(傳戒師)(수계사(受戒師))를 말한다.

수계의식은 전래되는 고유전통의식에 의해 행한다.

본 종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려가 되려는 자에게 유발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의식을 거쳐 득도 수계를 내릴 수 있다.

#### 제9조 (사승(師僧)의 자격(資格)과 도제(徒弟) 법통(法統))

사승은 은사(득도사), 계사(전계사), 법사(건당사(建幢師)), 증사(證師)(증명사(證明師))로 구분한다.

사승은 법납 10년 이상 30세 이상 비구계 내지 법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승은 도제를 보호하고 교육을 시킬 의무를 가지며, 도제는 사승을 존경하고 훈교에 순종하여야 한다.

사승과 도제간은 이낙(離緣)하지 못하며, 종단에서의 징계(懲戒)를 받아 사승, 도제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법의 법맥은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일전법을 유지한다.

단일법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단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정스님 또는 특별히 정한 이를 전계사로 규정하여 법통을 잇는다.

#### 제4장 승적(僧籍)의 취적(就籍) 전적(轉籍) 제적(除籍)

#### 제10조 (승적신청)

본 종 승려는 득도수계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원에 취적 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 사진 5매.

인장

승려 신청 등록원 1통(총무원)

수행이력서 1통(총무원)

서약서 1통(총무원)

추천서 1통 師僧 추천(각 교구원장)

학력증명서 1통(학교장)

취적등록금 영수증 1통(총무원 및 종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서류)

### 제11조 (승적, 취적)

총무원장은 입적서류에 의하여 심산한 후 취적을 허가하고 도첩과 승려증, 승려 등록원부 사본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 종에 입적한 승려는 입적일시부터 분한(分限)을 정유(享有)한다.

법납은 입산일로부터 기산한다.

승적사무에 있어 종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무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승적관리는 원칙적으로 총무원에서 관리하나 교구 총무원에 부분을 유치 보관할 수 있다.

총무원은 종무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 외에 승적을 유출할 수 없다.

### 제12조 (승려증의 정리 및 전적)

본 종은 승려의 분한향유를 위하여 승적의 전적 또는 복적으로 인하여 승적을 정리할 수 있다.

본 종은 타 종단 승려의 전적 시에 타 종단의 득도전적을 인정하고, 법지를 존중 하고, 향후 응시할 법지고시에 그 자격을 인정하며 소급할 수도 있다.

본 종 승려가 다른 교구에 취적교구를 옮길 경우 해당 총무원장의 동의서와 전입 총무원의 전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종단 승려가 본 종단에 전적하고자 할 때에는 본 종 승려를 법사로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 (승려의 휴(休), 정(亭), 제(除), 득적(得籍))

1) 본 종 승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휴적 하고자 할 때는 휴적원을 총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무원장은 휴적원 제출자의 요청에 의해 일정기간 휴적을 허가할 수 있다.

2) 본 종 승려가 정적을 필요로 할 때(징계 또는 분납금 미납) 등으로 본 종의 승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정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총무원장은 본인에게 통고하고, 통고가 불가능할 때는 총무원에 공고하거나 교계지에 공고할 수 있다.

3) 본 종 승려가 사망, 속퇴, 탈종 등 장기적(3년)으로 행방이 불명하거나, 제적, 징계 등으로 승려의 임무를 상실하였을 때는 총무원장 직권으로 제적할 수 있다.

4) 본 종의 승려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징계, 휴적, 정적, 제적된 승려에게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법에 따라 복적할 수 있다. 이때 총무원장은 총무회의를 열어 그 결과에 의해 허가한다.

## 제5장 권리와 의무

### 제14조 (권리)

본 종의 승려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법지고시와 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권리를 가지며, 각 종 행사의 참여와 혜택을 받을 권리와 부당한 이유로서 제적되지 않는다.

### 제15조 (의무)

본 종의 승려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실천하여야 한다.

승려는 불조(佛祖)의 유운(遺訓)을 받들어 항상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언행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승려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공공질서를 실천 하고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구호협력 하여야 한다.

승려는 불교의 전법을 통해 교화하고 중생제도와 보살품을 발휘하여 수행자의 모습을 경주해야 한다.

승려는 종단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에서 요구하는 제공과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종단이 규정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장 연수(研修)와 안거(安居)

### 제16조

본 종 승려는 개별 또는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종단이 실시하는 정기 연수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승려(법사,포교사)는 종단에서 실행하는 연수교육을 년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가 하여야 한다.

본 종의 연수교육은 간부연수교육, 포교사연수교육, 승려연수교육, 주지연수교육(교임포함), 신도연수교육으로 분리 또는 합동으로 실시한다.

승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기피할 때에는 각 종 공직참여와 각 종 고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

본 종의 승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원(禪院) 또는 염불원(念佛院)에 수선안거(修禪安居)로서 성만(成滿)할 수 있다.

- 1) 안거는 하안거와 동안거로 분류하여 선원 또는 염불원 또는 각급 본말사에서 실행한다.
- 2) 안거기간은 하안거(4/15-7/15 3개월간)와 동안거(10/15-1/15 3개월)로 정한다.
- 3) 선원장 또는 염불원장은 안거 성만자에게 안거증서를 수여하고 그 명단을 총무원에 통지한다.

## 제7장 건당(建幢)과 법위(法位)

### 제18조 (건당)

본 종 승려는 법사를 정하여 법맥을 전수 받아야 한다. 이 때 종맥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스님에게 의무적으로 건당한다.

본 종 승려가 건당하고자 할 때는 은사(恩師)스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타 종단에서 승적을 취득하고 이적한 자는 예외로 한다.

본 종 승려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고 건당한 자는 승적에 등재하지 않는다.

### 제19조 (법위)

본 종의 법위는 승려의 수행능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써 위계실천의 상징으로 하며, 그 책무와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

법계 이수자는 법위 급수에 의하여 종단 각 지위에 그 순위별로 등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법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대승정

대종사

종사

종덕

대덕

중덕

선덕으로 정하며 비구니는 중덕을 넘지 못한다.

### 제22조

법위고시(法位考試)는 총무원에서 실시하며 종정이 품서 한다.

제23조 법위고시는 응시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통해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나 종단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는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종정이 품서 할 수 있다.

### 제24조 (응시자격)

법위고시는 그 자격에 의하여 각 과에 응시할 수 있다.

법랍 10년 이하인 자는 종덕 4급 이상에 응시할 수 있다.

법랍 10년 이상인 자는 종사 3급 이상의 법지에 응시할 수 있다.

법랍 15년 이상인 자는 대종사에 응시할 수 있다.

대승정은 총무원장과 각 원장의 추대로써 종정이 품서 한다.

#### 제25조

법위고시 위원회는 총무원장, 장로의원, 종회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이 당연직으로 하며, 종정이 당연직 위원장을 수행한다.

#### 제26조

고시위원장은 법위고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법위증을 수여하여야 하며, 총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

법위응시자는 법위고시 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서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험전은 물론 시험 후에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 제28조

이 법의 정정 및 개정은 종회의원 3분의2이상 재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행 한다

### **제8장 수계단(受戒壇)과 각종계율(各種戒律)**

#### 제29조

본 종단은 승려의 등단을 위하여 계단을 설치하고 각 종 수계의식을 실행한다.

제30조 계단은 총무원장이 설치하고 종정이 당연직 전계사(傳戒師)가 되며, 장로의장 및 위원은 증사가 되며, 교육원장이 교수, 총무원장이 갈마아사리가 되어 계단을 구성하되 특정인을 세울 수도 있다.

#### 제31조

계단은 삼사칠증(三師七證)을 원칙으로 하나 사항에 따라 증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32조 (계단의 구분)

건당계단 - 본 종 승려는 반드시 건당계를 받아야 하며 사미계를 수지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 제 7장 제18조의 각 항에 준하고 전수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장소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

득도계단 - 본 종에 승려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재적사찰에서 은사를 정하여 삭발염의하고, 불명(佛名)을 받아 초심수행에 임해야 한다. 이때 은사는 득도자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도와 줄 의무를 가지며, 득도자는 은사스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단, 사미과에 합격할 때까지는 승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교제는 교계에서 통용하는 사미율의 초발심사경문 항례 의식을 주제로 한다.

사미니계단(沙彌尼戒壇) - 본 종 승려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걸쳐서 사미니 십계를 수지(受持)하여야 한다. 사미니계는 종단에서 설치하며 각 교구말사에서 공부를 하였거나,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 은사스님의 추천 또는 종단 교육기관의 장 추천으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구족계단(具足戒壇) - 본 종 승려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구족계(120계율)을 받아야 법단에 올라 설법을 하거나 제자를 둘 수 있다. 비구계를 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사미계를 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자로서 각 종 율의를 익히고, 소의경전을 습득하고 설교의 지식을 갖춘 자로 하며, 종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로 한다.

보살계단(菩薩戒壇)(대중계단(大衆戒壇)) - 본 종단의 승려나 신도 또는 포교사, 법사는 반드시 이 계단에 참여하여 대중오계 대중십계 또는 48경계의 계율을 수지하고 불명 및 계첩을 수여받아야 한다. 수계는 계단이 설하는 해당계율을 奉持하고, 불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며, 부처님의 유교에 따라 보살도를 행하여야 한다.

상기 각 항의 수계단에 참여하는 자는 계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득도수계자는 사전에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증, 졸업장 또는 수료증 또는 은사 추천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등 수계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0세 미만의 승려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각 계단에서 수지하는 계율은 다음과 같다.

### 삼귀의계

시방상주 부처님께 진정 의지합니다.

시방상주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정 의지합니다.

시방상주 교법을 실천하는 승가에게 진정 의지합니다.

### 삼업대계

입으로써 말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스스로 바른 뜻을 세워 잘 보호하겠습니다.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미십계 : 사미(사미니)는 사미율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20세 이하의 교도는 부모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2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국법으로 정해진 정사 외에 외도하지 말라.

진실 되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잡이 하지 말라.

삼보를 비방하고 설법하지 말라.

돈과 금은 보석을 몸에 지니지 말라.

항상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끼니를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 비구 120계

비구(비구니)의 정규 : 대교과에 합격한 세속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불교대학, 승가대학 및 동등학력자)

부양가족(처 또는 자식)을 거느릴 수 없다.

부양가족은 세속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독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남녀가 혼숙하거나 성교하지 못한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못한다.

모든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대중을 속이려 거짓말 하지 말라.

연정을 품어 서로 애무하지 말라.

계율을 어긴 대중을 비호하지 말라.

고의로 성기를 만져 정액을 내지 말라.

여인의 몸을 만지며 추악한 말을 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여 정조를 구하지 말라.

과욕을 부려 집을 짓고 빚쟁이가 되지 말라.

근거 없이 남이 중한 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지 말라.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고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근거 없이 계율을 어겼다고 모함하지 말라.

남의 집과 마을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  
양론을 벌일 때 잘잘못을 파악하지 말라.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도둑인 줄 알면서 득도나 출가시키지 말라.  
홀로 위험한 곳에 가거나 마을에 들어가 함부로 잠자지 말라.  
염탐심을 품은 자로부터 옷과 밥을 받으라고 권하지 말라.  
방편으로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파벌을 조성하여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나쁜 짓을 하는 대중과 어울려 허물을 숨기지 말라.  
함께 살면서 서로의 죄를 덮어 주라고 사르치지 말라.  
진심으로 삼보를 버리고 개교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후미진 곳에서 남녀가 추근대지 말라.  
교단에서 정해진 가사 외에 다른 가사를 수하지 말라.  
대중처소에서 잠잘 때 속세의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  
아무에게나 속옷을 빨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옷을 구걸하여 입지 말라.  
분수에 넘치는 옷을 많이 장만하여 입지 말라.  
누에고치 솜을 구걸하여 가사를 만들지 말라.  
검은 염소털로 침구를 만들지 말라.  
주었던 물건을 다시 빼앗지 말라.  
약을 먹되 과욕을 부리지 말라.  
대중의 물건을 탐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  
신도가 시주하는 대로 받지 않고 좋은 것을 탐하여 챙지기 말라.  
대중으로 가는 물건을 가로채지 말라.  
사찰을 지을 돈으로 개인의 영리에 쓰지 말라.  
방사를 만들 돈으로 개인의 영리에 쓰지 말라.  
집을 지으라는 돈으로 대중과 나누어 쓰지 말라.  
옷을 구하되 필요한 옷만 구해 입어라.  
거짓말은 작은 거라도 하지 말라.  
속인과 함께 자되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  
계를 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경을 외우지 말라.  
실제로 도를 얻었더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에게 말하지 말라.

여자에게 설법을 해주되 정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살아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

꾸미는 말을 하여 유혹하지 말라.

소임보는 스님을 비난하고 꾸짖지 말라.

경솔하게 비구니를 가르치지 말라.

교수하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구니에게 설법하되 해지기를 넘기지 말라.

비구니와 약속하여 함께 다니지 말라.

공양할 때는 장소를 가려서 먹되 아무 곳에서나 먹지 말라.

대중공양 때 장소를 이탈하여 먹지 말라.

만족하게 먹고 더 먹지 말라.

좋은 음식을 가려 구하지 말라.

전쟁하는 것을 구경하지 말라.

대중공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지 말라.

성을 내며 남을 때리지 말라.

분쟁을 끝내고 다시 일으키지 말라.

나쁜 소견을 가진 비구와 함께 살지 말라.

대소변 근처와 겨드랑이의 털을 깎지 말라.

국부를 씻으며 손짓으로 삽입하여 애무하지 말라.

아교 등으로써 성기를 만들어 쓰지 말라.

남녀가 함께 요와 이불을 덮지 말라.

남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질문하지 말라.

안거중에 대중을 쫓아내지 말라.

안거중에 돌아다니지 말라.

하천에서 나체로 목욕하지 말라.

승가의 옷을 속인한테 주지 말라.

속인들의 심부름꾼이 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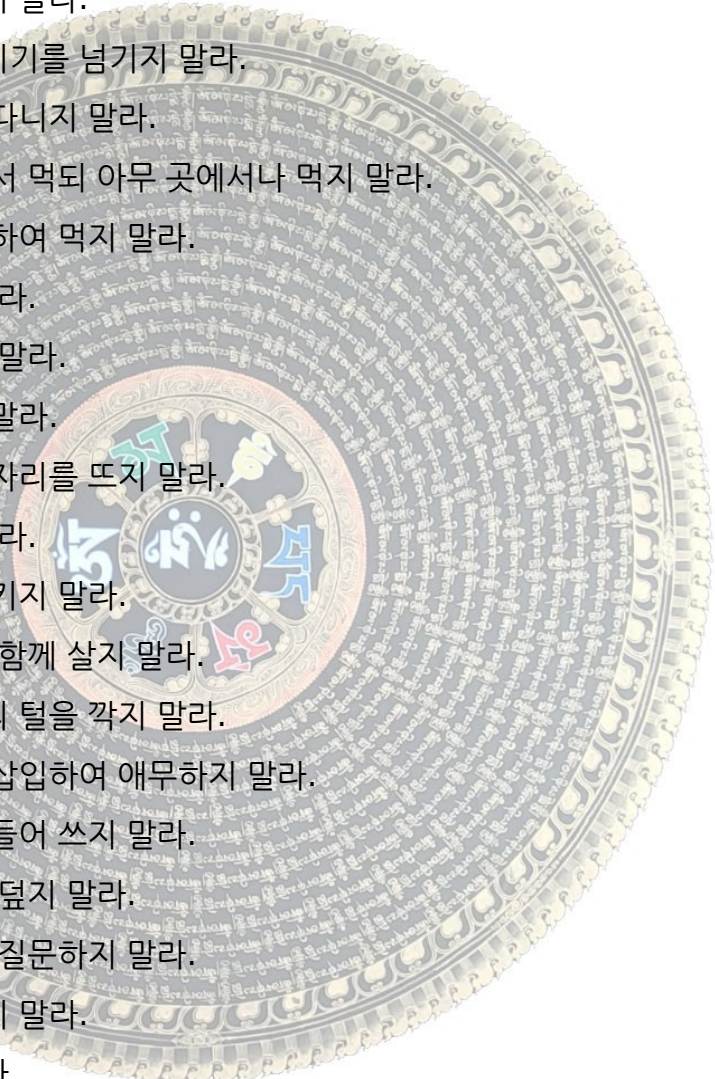
임신한 사람이나 유부녀에게 비구니계를 주지 말라.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비구(니)계를 주지 말라.

12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미(니)계를 주지 말라.

제자를 두고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

제자는 2년 이상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법랍이 8년 미만이면 비구계를 주지 못한다.  
부모나 배후자가 허락지 않으면 비구(니)계를 주지 말라.  
안거 해제 후 의심난 것을 자자할 때 참석해야 한다.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한다.  
비구니는 비구스님 절에 예고 없이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의 집을 두고 서로 질투하지 말라.  
비구니나 사미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게 하지 말라.  
가족신과 가족장갑을 쓰지 말라.  
승복을 입지 않고 신도집에 들어가지 말라.  
날이 저물어 무단히 절집을 나가지 말라.  
안거를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불구에게 계를 주지 말라.  
양성자에게 계를 주지 말라.  
세속기술을 배워 가르치거나 생활하지 말라.  
새로 계를 받은 승려를 깔보지 말라.  
비구니 혼자서 계를 주지 못한다.  
환자가 아니면 고기, 우유, 꿀 등을 구걸하여 먹지 말라.  
법의를 입고 경거망동하거나 모자를 쓰고 신도집에 가지 말라.  
식사는 조용하고 깨끗하게 먹어라.  
몸을 단정하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탑 주위에 대소변이나 오물을 버리지 말라.  
법을 설할 때는 위엄을 갖추고 계단을 설치하여 설하라.  
꾸짖을 때에는 본인 앞에서 진의를 파악하여 꾸짖어라.  
참회한 자는 너그럽게 용서해라.  
잘못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다스려라.  
잘못은 본인의 자백에 의하여 다스려라.  
정신병자라도 회복된 때에는 온전히 인정하라.  
무기를 소지한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지팡이를 들었거나 뒷짐진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청법자 보다 낮은 자리에서 설법하지 말라.  
누워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부처님보다 높은 곳에서 잠자지 말라.

청법자는 앉았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 대중육계

### 재가초계

시방상주 부처님께 지정 의지합니다.

시방상주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정 의지합니다.

시방상주 교법을 시천하는 승가에게 진정 의지합니다.

입으로써 말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스스로 바른 뜻을 세워 잘 보호하겠습니다.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 대중10계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국법으로 정해진 배우자 외에 성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술과 마약을 먹지 말라.

악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거짓말과 발임말을 하지 말라.

욕심을 부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성을 내어 남을 두렵게 하지 말라.

어리석음으로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라.

### 48구경계

불법승 상보를 항상 공경하라.

과욕을 부려 술을 먹지 말며 차마시듯 가볍게 하라.

고기를 절제 없이 먹지 말라.

마늘, 달래, 무릇 양파, 가는 파 등 5신체를 먹지 말라.

계를 범한 이를 마땅히 참회 시킨다.

법사를 공양하며 법을 청해 들어라.

법문하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 들어라.

나쁜 마음으로 공무를 보지 말라.

남을 비방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잘못되게 하지 말라.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모든 생명을 내 목숨같이 여겨라.  
성내고 다투어 원수를 맺지 말라.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해라.  
불법을 잘 배워 포살하라.  
혼자만 이익을 챙기지 말라.  
대중과 함께 착한 일을 권선하라.  
불쌍한 중생을 보면 잘 구호해 줘라.  
모든 중생을 괴롭히지 말라.  
잠시라도 자비심을 잃지 말라.  
원력을 세워 중생을 제도하라.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이익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세력에 아첨하여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어른을 잘 섬기고 아이들은 잘 보호하라.  
권력으로 교단을 파괴하고 억제하지 말라.  
앞뒤의 순서를 핑계로 어기지 말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항상 보살피라.  
꾸짖을 때는 본인 앞에서 진의를 파악해 꾸짖어라.  
탑 주위에서 대소변 및 오물을 버리지 말라.  
삭발한 출가자의 스승이 되지 말라.

상기의 계단에 참여하여 수계를 이수한 자는 계단장에서 수계증서를 수여 받으며 계단장은 10일 이내에 총무원장에게 그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장 종정(宗正) 추대법(推戴法)

### 제33조 (종정자격)

종정은 자비원융하고 행해원만(行解圓滿)한 비구(比丘)로서 연령 60세 이상, 법납 30년 이상, 법위대종사 이상인 자로 한다.

### 제34조 (추대방법)

본 종의 종정을 추대하고자 할 때는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대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추대한다. 추대위원회는 장로위원 전원과 종회의장 각 원 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재적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추대한다.

추대위원회는 장로원장 또는 최고령자가 위원장이 되고 총무원장이 간사가 되어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한다.

추대위원회는 종정추대 결과를 종회와 총무원에 통보하고 위원장의 이름으로 당일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정추대위는 부종정 2명도 함께 추대하여 상기 3항의 방법에 의해 발표 공고하여야 한다.

종정이 유고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사의를 표시하여 궐위되었을 때 부종정의 범위순서로 종정의 권한을 이양하며 범위의 품수가 같을 시는 득계 순서로 결정 한다.

부종정이 권한을 이양하였을 시 전 종정이 잔여 임기로 하며, 총무원장은 잔여 임기 3개월 전에 종정추대위를 재추대 하여야 한다.

종정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장 장로회의법(長老會議法)

### 제35조

이 법은 제7장 25,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회의를 구성하여 의장1인을 선출하고 그 임무를 시행한다.

### 제36조

장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자문기관으로써 종정추대 권한을 가지며, 이 때 의장은 종정 추대위의 위원장에 당원직으로 선임된다.

### 제37조

종단의 비상시에는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종헌종법의 정·개정 등 총무원장의 선출, 임명권을 가진다.

### 제38조

장로회의는 각 위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무원에 어떠한 경우라도 수행 장소와 거주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무원장은 2주 이내에 이를 수용 해결하여야 한다.

### 제39조

장로스님은 도제 문중 파벌에 관계없이 교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종단 산하 여타 기관에서도 이를 외면하지 못한다.

#### 제40조

장로스님이 연로(年老)하여 지병에 드시면 종단 차원에서 치료 및 간병 등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해드려야 한다.

#### 제41조

장로스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디서고 종단장으로 다비를 모시며, 부도를 조성해 종단이 지정한 부도원 또는 주석사암에 모신다.

#### 제42조

장로스님의 열반 후 유품(연구서 및 교시계송 및 유골)은 종단에서 관리 소장한다.

#### 제43조

장로스님은 종단에서 정한 장로원에서 평생 주석할 수 있으며, 총무원은 장로위원들을 위해 장로원 수양처를 구비해야 한다.

### 제11장 중앙종회법(中央宗會法)

#### 제44조

이 법은 종헌 제8장의 각 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5조 (의원선출)

종회의원은 총무원 각 원의 원장과 부장급 각 교구 총무원장이 당연직 의원으로 선출한다.

#### 제46조 (의장선출)

종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 2인과 사무국장 1인을 선출한다.

#### 제47조 (의원정족수)

의원의 정족수는 종헌 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법 4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48조 (의원의 의무)

종회의원은 종단의 입법기구로서 종헌종법 개정 및 정정, 폐지 등의 의결을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할 수 있으며, 각 항의 법규에 의해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총회의원은 종단의 예산 및 결산의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의원은 종단재정의 증재 및 처리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의원은 총무원장의 선출, 각 원장의 인준권을 갖는다.

총회의원은 총무원장 및 각 원장의 해임권을 갖는다. 이 때 총무원장 및 각 원장의 해임결과는 종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법 제45조의 규정에 사고가 발생 시 총무원장이 승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

#### 제49조 (의원의 임기 및 임명)

선출된 의원은 임기 4년으로 하며, 유고시 승계자는 잔여임 기로 한다.

의장의 임기도 본조 규정에 의하며, 유고시 부의장이 범위순위로 승계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도 본조에 준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의장의 임명은 종정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부의장의 임명은 의장이 임명한다.

#### 제50조 (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15일 준하여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회기를 정한다. 임시회의는 각 원이 요청해 오면 각 원과 협의하여 회기의 기간, 날짜 등을 정하여 소집한다.

결의내용 : 정기회의에서는 종단운영의 예산, 결산에 대한 인준과 의결

임시총회에서는 각 원의 요청에 의해 그 의제를 정하여 의결 및 인준한다.

#### 제51조 (의원의 자격)

의원은 30세이상, 법납 10년이상, 구족계, 법위, 선덕 이상의 수지 자로 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미달되는 자는 대리인을 추천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의장은 법계 대종사 이상, 법납 20년이상, 연령 50세이상)

#### 제52조 (총회해산)

총회가 종정의 유시가 해산되었을 경우 의장과 부의장, 사무국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 제53조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이끈다

#### 제54조

의장은 의제에 있어 발원할 수 있으나 투표참여는 할 수 없다.

#### 제55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56조

중앙총회의 제 경비는 총무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집행은 사무국장이 한다.

#### 제57조

중앙총회의 소집이 어렵게 되었을 때는 의장단(사무국장 포함)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58조

의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각 원에 통보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9조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원의 출석 유무를 확인하여 의결된 회의록에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60조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세법은 종정스님의 유시로 대체한다. 이때 사무국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종정스님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제12장 총무원법(總務院法)**

#### 제6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9장 각 조에 부응하고 총무원의 조직, 직제, 부서, 인사, 업무 분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총무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62조 (각 원의 설치 및 조직)

중앙총무기관으로 원(院), 부(部), 실(室)로 하며, 보조기관으로 부(部), 실(室), 국(局), 과(課), 계(係)를 둘 수 있다. 각 기관의 세부사항은 종법 제1장의 직제명칭에 준한다.

#### 제63조 (각 원장의 직무와 권한)

각 종무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종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각 부서장과 국장 및 종무원은 소속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제64조 총무원장은 산하의 조직, 직제의 예산 형편에 맞추어 종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 제65조 (총무원의 자격)

총무원 산하 각 부의 부장은 연령 40세, 법납 10년 이상자로 법계 선덕의 법계를 이수한 자로 임명한다. 국장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총무원장은 대종사품수 이상, 법납 20년, 연령 45세 이상)

#### 제66조 (총무원의 임명)

각부, 국의 종무원은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부장이상의 종무원은 종회에 통보하며, 부장 이하 국장, 계장, 일반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 제67조 (업무의 인계인수)

총무원장과 각 원장, 각 부장은 임기만료 또는 사정에 의해 이임할 시는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를 깨끗이 끝날 때까지 집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68조 (총무원장의 임기)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9조 (총무행정감독권한)

총무원장은 종단 최고의 총무행정 수반으로서 종헌과 종법, 종령에 의하여 모든 종무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 제70조 (총무회의)

총무원장은 종단의 중요정책을 협의하고 각 원 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총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71조 (총무회의의 범위)

각 원의 원장으로 총무원장, 종정사서실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감사원장, 문화원장, 수선원장, 전국 신도회장, 사회봉사원장, 비구니원 장, 종립학교원장, 각 교구원장, 총무원 부장급 이상 종무원, 총무 원 부원장으로 정한다. 간사는 총무부장이 회의를 주관하며 겸할 수 있다.

## 제72조 (원장직무대행)

총무원장 유고시는 부원장이 대행하고 총무원장, 부원장이 유고 시는 기획실장, 총무, 교무, 재무, 규정, 사회, 국제, 문화, 기획실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73조 (총무원장 기획실)

총무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산하 기획실을 두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 제74조 (각 부처)

총무원의 원활한 종무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를 둔다.

각부 : 총무부, 교무부, 재무부, 포교부, 감사부, 국제부, 문화부, 사업부, 봉사부, 사회부

각국 : 상기 각 부서에 국을 두어 부서의 종무를 보좌할 수 있다.

일반종무원 : 총무원의 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일반종무원을 둘 수 있다. 일반종무직은 전산원, 사무원, 경리사원 등

## 제75조 (기획실 업무)

기획,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종단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종단 재산처분 및 증재와 각 종 통계,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국내외 교계의 동향조사 및 종무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종무처리 현황 및 종단의 송사에 관한 사항

종단이 필요로 하는 물자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76조 (총무부 업무)

총무원의 인사관리 및 총무회의의 사무관리

종무행정의 사무행정 관리 및 총무회의의 관장에 관한 사항

각 원 및 부서간의 행정지원 및 물품관리 사항

종단의 각 종 서류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각 기관의 포상 및 말사등록에 관한 사항

승적입적 및 각 교구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제77조 (교무부 업무)

역경 및 경전 간행, 법요식 및 불사에 관한 사항

학술 및 교육원 지원에 관한 업무사항

각 종 계단설치 시행 및 신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각 종 예하 단체의 지도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각 종 수련대회 계획 및 종도 친목에 관한 사항  
각 종 단체 설립 및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 제78조 (재무부 업무)

사찰 분담금 및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각 종 후원금 및 헌금에 관한 사항  
종단의 금전 출납, 회계에 관한 사항  
종단 재산관리 및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종무원의 급여관리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제79조 (규정부 업무)

각 원 종도의 법규지도 및 기강에 관한 사항  
징계대상의 조사 및 사면, 복권에 필요한 조사 사항  
종단 승려의 비행 및 법규위반의 조사에 대한 사항  
종도의 진정 및 제소 사정원의 업무지원에 대한 사항

#### 제80조 (포교부의 업무)

종단 PR, 광고, 포교활동에 관한 사항  
종단 포교사 지원 및 포교원장의 지원사항  
신도포교 및 신도 동향파악 및 조직 지원사항  
각 급 본말사 포교활동 지원 및 계획수립 사항

#### 제81조 (감사부의 업무)

종단 종합업무의 서류감에 대한 사항  
종단 본말사 행정지도 및 감사에 대한 사항  
종단 업무집행의 부조리에 대한 감사 사항  
예하단체의 예산 및 지원 지출, 지입에 대한 사항

#### 제82조 (국제부 소관업무)

국제불교 교류 및 포교에 관한 사항  
외국인사 접대 및 초대에 관한 사항  
외국인사 통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국제합동법회 수립 및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국제 성지순례 및 유학에 관한 사항

### 제83조 (문화부의 업무)

불교문화 전통의례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불교의식 전교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사항

불교미술대회 개최 및 전통의식 발표 사항

방송신문에 관한 업무사항

불교문화재 관리 및 발굴에 대한 사항

### 제84조 (사업부의 업무)

종단사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사항

각 종 불사에 대한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사항

각 종 사업추진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각 급 공공시설 관리 및 설치에 대한 사항

### 제85조 (봉사부의 업무)

각 종 행사의 지원 및 봉사에 관한 사항

사회사업의 지원 및 계획 수립 사항

종단 종비도제의 지원 및 그 관리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위문공연에 관한 사항

양로원, 고아원, 군부대의 위문에 관한 사항

### 제86조 (사회부의 업무)

양로복지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고아원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및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해난민 구호에 관한 사항

종단 노장스님 지원 및 장로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7조

각 부서 소속 예하 종무 소관은 부서장의 지휘하에 그 업무를 분한 관리한다.

### 제88조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무원장의 지시로 담당 분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89조

각 부서장의 보직, 면직 등은 총무원장이 결정하며, 인사발령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원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 제90조

각 부서장 및 국장, 계장, 일반 종무원은 사항에 따라 상근, 비상근의 결정을 총무원장 책임으로 결정한다.

#### 제91조

각 부서장 및 각 급 종무원은 무급을 원칙으로 봉사하되 최소한의 경비는 총무원장 이 지출할 수 있다.

#### 제92조

각 부서장은 본 종 승려로서 임명하며 국장급 이하는 일반 불자로서 총원할 수 있다. 이때 전산원 또는 경리원은 유급으로 총당할 수 있다.

### 제13장 교육원법

#### 제93조 (목적)

이 법은 종헌 10장 각조에 부응하고 교육원의 이념에 따라 종단의 인재양성 에 필요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94조 (교육방침)

이 법이 정하는 교육방침은 부처님의 유교에 의한 제경전의 전교를 통해 불법을 이해시키고 그 가르침에 실천하여 불타의 보살정신으로 하화중생의 실천행으로 극락정토 구현을 위한 도제양성, 중생구제의 대원을 성취하고자 한다.

#### 제95조 (교육기관의 설치)

본 종의 교육기관은 도제양성을 위한 종립학교와 수행을 목적으로 한 선원, 염불원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교육을 통해 교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 교육원 연수원, 수련원 등을 설치 운영한다.

#### 제96조 (수학의 권리)

본 종의 전 종도 승려와 신도는 종립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97조 (교육의 균등)

본 종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피 교육자는 재능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8조 (교육자의 지위보장)

본 종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교직자는 그 지위에 걸맞게 우대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이 보장된다.

#### 제99조 (교육비의 징수)

본 종은 교육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찰 및 승려 교임 및 창건주, 법사, 포교사 종도에게 교육비를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100조 (교육기관의 종류)

본 종의 교육기관은 강원 불교대학, 승가대학, 연수원, 사회 교육원, 수선원, 염불원, 선원, 종립학교로 구분한다.

#### 제101조 (설립허가)

본 종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교육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무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제102조 (지휘감독)

본 종의 교육기관은 교육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각 급 해당 기관장은 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 제103조 (교육교재)

본 종의 교육교재는 본 종의 종헌종법이 정하는 종지종풍에 부합하여 정하고 교육원장이 지정하여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4조 (교육자의 채용)

본 종 교육기관의 교육자는 각 기관의 기관장이 추천하고 교육 원장이 제청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 제105조 (교육기관의 관리)

본 종의 교육기관 관리는 각 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임금, 강의료, 수업료 등을 총무원과 협의하여 책정한다.

#### 제106조 (교육생의 대우)

본 종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종단 각 종 기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교육의 수료자에게는 그 자격과 수료증 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107조 (강원)

본 종의 강원에서는 불교 기본의례 초발심 자경문 사미율의 경전강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강원회칙으로 정한다.

#### 제108조 (불교대학)

본 종의 불교대학에서는 기초교리해설, 전통의식교육, 기초의례교육 등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9조 (승가대학)

본 종의 승가대학에서는 승려의 자질교육, 기초의범강의, 경정강의, 교리해설강의 등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10조 (연수원)

본 종의 연수원은 수행승의 자질 기본율의 강의 중무행정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지침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 제111조 (사회교육원)

본 종의 사회교육원은 생활불교의 강의, 사회참여의 지도교육, 불자의 생활 지도교육을 기본으로 세부지침은 강원회칙으로 정한다.

#### 제112조 (수선원)

본 종의 수선원은 참선수행교육, 참선참여교육, 불교건강교육을 기본으로 세부지침은 선원회칙으로 정한다.

#### 제113조 (염불원)

본 종의 염불원은 불전의 염송교육, 염불정근수행, 염불염송연구를 통한 진언해설 등을

기본교육으로 하며, 세부지침은 염불원 회칙으로 정한다.

#### 제114조 (선원)

선원교육의 방침은 참선지도교육, 경전연구, 불교무술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하며 세부지침은 선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15조 (종립학교)

본 종단의 종립학교에서는 일반교과 과정을 통한 학력취득, 불교생활 지도, 불교포교를 위한 사회교육을 기본으로 세부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법은 정부의 교육법에 정한 초,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기본으로 한다.

#### 제116조

상기 각 종 종단 교육기관의 설립은 종헌 종법이 지향하는 종단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도의 양성, 종도의 자질향상, 신도의 교화사업, 포교의 일환으로 그 뜻이 부합되어야 한다.

#### 제117조 (교육원장의 자격 및 임명권 임기)

교육원장은 종사 이상의 법계를 품수한 자로 연령 45세 이상, 법납 20년 이상인 자로 총무원장이 선임하여 종정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1) 교육원장은 각 급 기관교수, 강사를 수선원에 지원 요청한다.
- 2) 수선원에서 지원된 교사, 강사는 각 종 교육을 책임 교육한다.
- 3) 교육원장은 수선원장과 협의하여 각 급 대표를 임용한다.

### 제14장 포교원법

#### 제118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1장 각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교원의 조직 직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119조 (조직)

포교원에 포교원을 대표하고 포교원 업무를 총괄하는 포교원장을 두며 산하에 부원장, 부장 등의 직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120조 (원장의 자격 및 임기)

포교원장은 연령 50세 이상, 법납 20년, 법위종사 이상의 승려로서 총무원장이 제청하며 종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 제121조 (부원장)

포교원내에 부원장의 직제를 두어 포교원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 하며, 연령45세, 법납 15년, 법위 중덕이상의 품수자로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원장의 임기와 같으며 유고시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제122조 (임원)

포교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임기자격 등의 조건은 총무원 종무원에 그 자격을 준한다.

#### 제123조 (포교단체의 조직)

포교원장은 원활한 포교활동을 위해 특별히 아래 항의 포교단체 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합창단의 조직운영

학생회의 조직운영

불교 신행단체의 조직운영

각 기업체의 신행단체 조직운영

군부대 불교 신행단체 조직운영

연예인 단체조직 및 운영

#### 제124조 (포교사의 육성)

본 종 포교원은 각 단체의 포교활동을 위해 포교사의 교화사업에 진력할 수 있으며 일정교육의 이수자에게 포교활동에 관한 지원관리 할 수 있다.

#### 제125조 (포교사의 종류)

포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제포교사

중앙포교사

교임포교사

#### 제126조 (포교사의 임무)

본 종의 포교사는 사찰운영, 대중포교, 국제교류사업 등을 통해 불법의 전교와 불법 홍보의 의무를 가진다.

### 제127조 (지도감독)

본 종의 포교사는 포교원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28조 (포교사의 권리)

포교사는 사찰의 창건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신도 포교와 관리도 할 수 있다.

### 제129조 (포상과 징계)

본 종 포교사가 그 책무를 다하고 사회포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는 포상을 할 수 있으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종단 종헌종법에 반하여 그 위반행위가 드러나 종단에 누가 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징계할 수 있다.

### 제130조

이 법외의 새로운 법이 요구되거나 정정하고자 할 때는 포교원장이 제정 또는 정정 하여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5장 호계원법

### 제13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12장 각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132조 (조직)

호계원에 재심호계위원회(再審護戒委員會)와 초심사정위원회(初審司正委員會)와 부서를 둔다.

### 제133조 (직능)

재심호계위원회의 직능은 다음 항과 같다.

승려의 징계 종도의 제소 안건에 관한 재심  
종도의 진정, 청원, 행정소청, 징계법규, 유권해석  
종회의결 제출한 기타 호계원에 속한 사항

### 제134조 (직능2)

초심사정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사정부에서 제소한 징계에 관한 사항  
총무기관 처분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항  
지방 총무원의 제소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제소된 사항

#### 제135조 (사정부)

사정부의 직능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총무원의 세입세출 결산감사 및 각 기관의 결산감사에 관한 사항  
종단 각 기관직무, 교구기관직무, 기강에 대한 사항  
감사 및 처리결과를 사정원장의 인준을 받아 총무원에 제출

#### 제136조 (임무)

호계원은 호계원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한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재심호계위원장은 호계원장인 된다.  
재심호계위원장은 초심사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초심사정위원장은 호계원장이 된다.  
사정부장은 사항에 따라 사정위원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한다. 이때 사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 제137조 (자격)

호계원 구성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호계원장: 연령 50이상, 법납 20년, 법계 종사 이상  
부원장: 1항과 같다.  
사정부장: 연령 40세, 법납 15년, 법계 선덕 이상  
사정위원은 필요에 따라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각 위원회 소집은 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결의는 총무원에 필요할 때 보고한다.

#### 제138조 (출석요구)

호계원장은 사정 또는 감사대상의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하여 반론 또는 변명 및 증언을 해야 한다.

#### 제139조

호계원장은 3번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권 처리할 수 있다.

**제140조 (결의사항 결과통보)**

호계원장은 사안의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1조 (업무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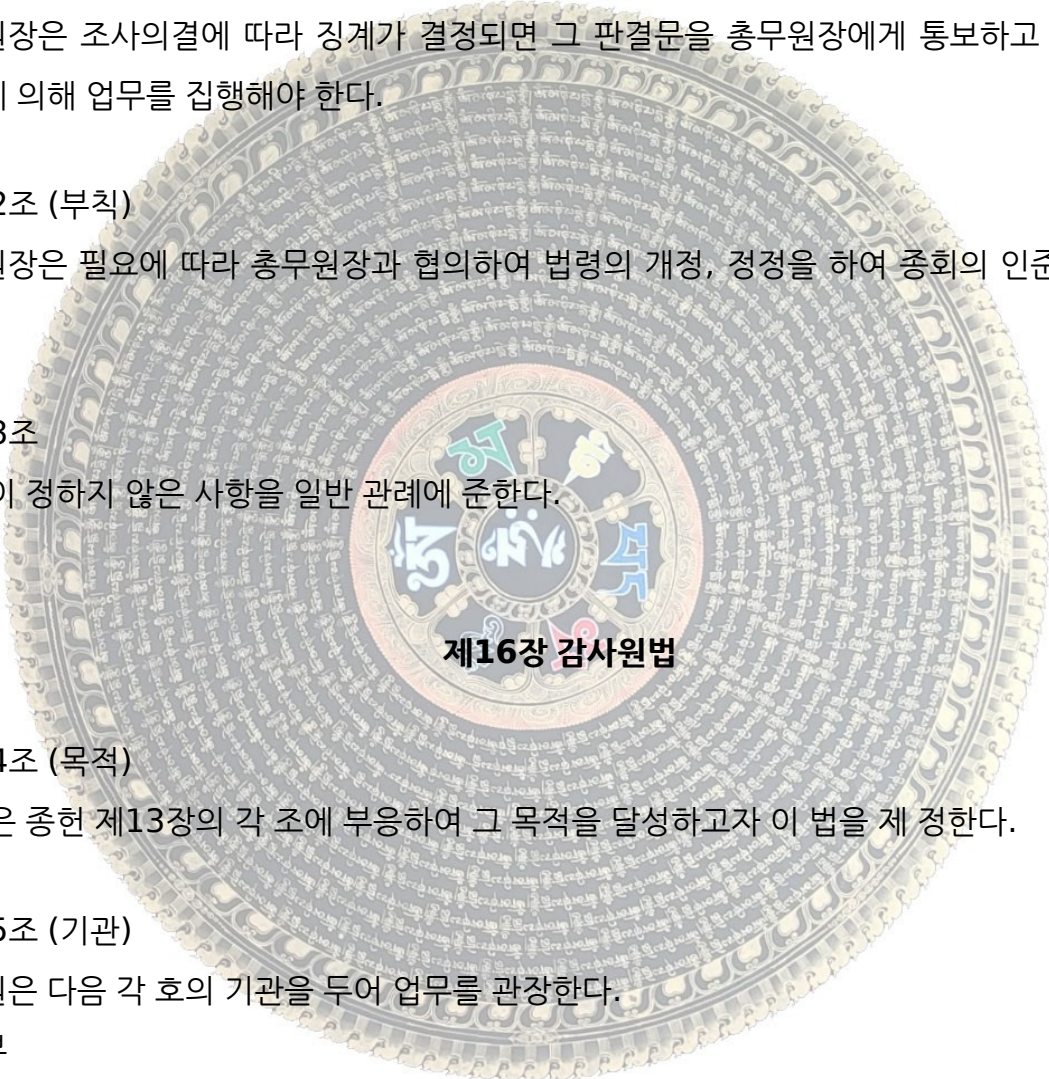
호계원장은 조사의결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면 그 판결문을 총무원장에게 통보하고 총무원장은 판결에 의해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42조 (부칙)**

호계원장은 필요에 따라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법령의 개정, 정정을 하여 종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143조**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6장 감사원법**

**제144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3장의 각 조에 부응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법을 제 정한다.

**제145조 (기관)**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어 업무를 관장한다.

감사부

감사위원회

**제146조 (직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한다.

①부원장 ②감사부장 ③위원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궐위 시 업무를 대행한다.

감사부장은 위원을 구성해 감사직무를 수행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 감사부장에 준한다.

종회 사정원이 추천한 자는 위원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추천에 의한다.

감사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원장이 부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 제148조 (부칙)

감사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직제 및 이 법의 정·개정을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49조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17장 문화원법

#### 제150조 (목적)

이 법은 종헌 14장 각 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 제151조 (조직)

문화원에는 문화원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부서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부

문화연구위원회

#### 제152조 (직제의 업무)

부원장, 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문화부장, 문화원 일체의 사업수립 및 집행을 하며 사안에 따라 위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연구위원회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제153조 (업무소관)

종단 전통의식 및 경전출판 중보 발간에 관한 사항

종단소속 사찰 내 불교문화 유사파악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불교용품 조달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불상, 탱화, 4물, 연, 단집, 탁자, 의복, 불탑, 묘탑에 대한 조달 및 구입에 대한 사항

불교미술 전시회 개최, 불교예술대회, 불교무술대회에 관한 사항

#### 제154조 (자격 및 임기)

원장 : 법납20년, 연령50세, 법위종사 이상자로 임기는 4년

부원장 : 원장의 자격에 준한다.

부장 : 법납10년, 연령40세, 법위선덕 이상자

위원 : 부장에 준한다.

#### 제155조

문화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 각 종 대회 준비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총무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대표는 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제156조

문화원장은 각 종 대회를 주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57조 (문화원장의 임명)

문화원장은 총무원장이 선임하여 종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

#### 제158조

각 단체의 위원 위촉은 원장이 위촉권을 가지며 임원 임명권도 가진다.

#### 제159조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계에 따른다.

#### 제160조

이 법의 개정, 정정, 폐지는 문화원장이 수립 제정하여 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8장 수선원법

#### 제16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5장 각 조의 목적에 부응하여 그 법규를 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범을 제정한다.

#### 제162조 (구성원)

수선원은 수선원장을 두어 수선원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급 직제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원장

부원장

도감  
수선부장

**제163조 (자격)**

원장 법납30년, 연령60세, 법위 종사 이상  
부원장 법납15년, 연령50세, 법위 대덕 이상  
도감 법납15년, 연령50세, 법위 종덕 이상  
수선부장 법납10년, 연령40세, 법위 선덕 이상

**제164조 (임명권)**

원장은 총무원장이 선임하고 종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 부원장이하 직급은 원장이 임명하고 총무원에 통보한다.

**제165조 (소관업무)**

수선원은 종법이 정하는 교육원법 제100조 규정으로 설립된 연수원 사회교육원 수선원 영불원 선원의 교육과정을 자문하며 육성지도 한다.  
수선원은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강사 지원 시범 교수 지원을 위해 각 기관 지정강사와 교수를 추천한다.  
수선원장은 교육원장과 협의하여 교육방침, 교재신청 등을 지정한다.

**제166조 (직제의 업무)**

원장 : 원장은 수선원을 대표하여 총괄한다.  
부원장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도감 : 각 급 기관의 기관장 교육 편성 지원의 파견 업무를 관할한다.  
부장 : 수선원의 행정사무원장 지시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67조**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 법의 개정, 정정, 폐지 등은 원장이 수립하여 종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19장 신도단체법**

**제168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6장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규범을 제정한다.

#### 제169조 (정의)

이 법이 정하는 신도라 함은 본 종단 소속 각 급 사암에 소속하여 불교의 교리에 귀의하여 신앙하고 외호하는 남녀불자를 말한다.

#### 제170조 (자격)

본 종의 신도는 삼귀의례, 5중대계, 대중십계, 48구경계, 삼업계 등의 수계를 호지하고 각 급 사암 신도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 제171조 (적용)

본 종의 신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화하고 관리한다.

신도회장은 신도회에서 추천하거나 주지스님의 제청으로 선출하고 총 회장은 전체회의에서 선출 또는 총무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 제172조 (수계)

본 종의 신도는 총무원과 본 종단 소속 사암에서 설치한 계단에서 삼귀의례 삼업대계, 5중대계, 대중십계, 48구경계 등을 수지하여야 한다.

#### 제173조 (취적)

본 종의 신도는 본 종단 소속 사암에서 주관하는 신도단체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신도증을 받아야 한다.

1항이 정하는 가입원서는 축원카드를 말하며 신도 주소록에 등재함으로써 본 종 신도로 입적된다.

신도단체의 입회는 각 사암의 신도회가 규정한 범례에 따른다.

본 종 신도는 신도회가 규정한 제반규범에 따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74조 (복장)

본 종 신도의 복장은 일상복으로 하며 법회의 참석 시에 착용하는 법복은 별도로 제정한다.

#### 제175조 (신도의 권리)

본 종의 신도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종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참여

일반종무직의 추임 신도법계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사찰을 창건 운영할 수 있으며 신행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수행 포교활동에 종사하고 종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76조 (의무)

본 종의 신도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무를 가진다.

종단 및 사찰을 위호하고 불법을 보호할 의무

종규에 따라 종단 또는 사찰에 의무금, 성금 시주한다.

법회 불사 등 불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한다.

종지 종풍을 선양하여 종단 발전에 협력한다.

종단 또는 사찰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기수행에 전력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정화 또는 봉사사업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삼보를 신봉하고 위호하여야 한다.

#### 제177조 (금지사항)

본 종의 신도는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삼보와 종단에 종사하는 종무원을 비방하는 행위

사찰 또는 단체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

종단 또는 사찰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진상을 사회에 유출하고 비방하는 행위

승려의 직무 행위에 방해하는 행위

#### 제178조 (종립교육원 참여)

신도는 종립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다.

종단에서 운영하는 불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종단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속 사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다.

#### 제179조 (신도회)

본 종단 및 소속사암에 등록된 신도는 그 단체장을 선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국신도회 : 종단소속 신도회의 중앙모임체로 전국 신도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단체장은 회칙과 임원명부를 총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구신도회 : 각 지방 총무원은 총무원 산하 신도회의 모임을 갖고 교구단위 신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단체장은 전국신도회와 총무원에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회칙과 임원명단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암신도회 : 각 사암 신도는 사암산하 신도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때 단체장은 주지스님께 회칙과 임원명단을 보고한다.

각종단체 : 각 급 신도는 합창단 봉사단 후원회 청년회 등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때 회칙과 임원을 소속사암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0조 (포상)

본 종단과 각 사암 신도단체장은 신도의 사기진작과 신도단체발전을 위해 아래 항에 포상할 수 있다.

삼보호지와 가람수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수행의 모범, 포교활동의 공로가 있는 자  
사회봉사와 교화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불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제181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훈장수여 및 훈장수여증서  
표창패 및 감사패  
서류표창 및 감사장  
기념품 및 상품전달

#### 제182조 (시행방법)

신도단체장은 포상자를 선정하여 소속 사암주지 또는 각 급 단체장에게 추서하여 각 급 단체장의 이름으로 수여토록 한다.

#### 제183조 (징계)

본 종의 신도로서 이 법이 정한 제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단 또는 사암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자는 관계 단체장의 이름으로 징계 및 제적할 수 있다.

#### 제184조

본 종 각 급 신행단체의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제185조

이 법을 개정, 정정, 폐지하고자 할 때는 각 급 단체장이 소속단체 감독권이 있는 스님과 협의하고 총무원에 인가를 얻어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20장 사회복지 활동법

### 제186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7장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법으로 규정한다.

### 제187조 (조직)

본 종단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각급 단체를 두어 운영하며 교육원에 그 지휘 감독권을 주어 교육원장이 지휘 감독한다.

### 제188조 (임명권)

본 종단의 각급 단체장은 교육원장이 선임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법인대표는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제189조 (단체의 분류)

이 법은 아래의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심신수련학교

장묘사업

### 제190조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종단이 설치하거나 각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여건 취지에 따라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

### 제191조 (유치원)

유치원은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의 위탁운영 또는 종단이 설치한 시설 및 각 급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및 여건 취지에 따라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

### 제192조 (양로원)

양로원은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의 위탁운영 또는 종단이 설치한 각급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및 취지 여건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93조 (심신수련원)

심신수련원은 종단이 설치하거나 각급 사암이 설치하고 그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별도의 법을 정한다.

### 제194조 (장묘사업)

장묘원은 정부의 설치로 인한 위탁경영 또는 종단이 설치한 시설, 각급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및 여건 취지에 따라 별도의 법을 정한다.

### 제195조

사회복지 활동법은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사원장의 감사에 응하며 총무원장이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 제196조

각급 단체의 예산은 단체장이 세우고 교육원장과 협의하여 총무원장의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 제21장 재정 및 회계법

### 제197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8장 각조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규정 한다.

### 제198조 (예산결산시기)

본 종단의 각급 단체는 그 예산 및 결산을 매년 11월30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한다.

### 제199조 (경유)

총무원은 각급 단체에서 제출받은 예산결산의 계획서 및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각급 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서의 적정한 사업이라 인정되면 종단사업의 계획으로 하여 종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 제200조 (회계의 종류)

회계는 총무원에서 수립하는 일반회계와 각급 단체에서 수립하는 특별회계로 나눈다.

#### 제201조 (재정의 종류)

재정에 관한 분류는 종단의 관리에 의한 직접재정과 각급 사찰에서 설치한 간접재정으로 분류한다.

#### 제202조 (직접재정의 정의)

직접재정의 명칭은 종단재정이라 칭하며 종단명의로 등록된 재정을 말한다.

#### 제203조 (종단재정의 관리)

종단재정의 관리는 총무원장의 감독 하에 관계 기관장의 관리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과 결산은 총무원장의 허가로 인하여 집행한다.

#### 제204조

종단재정의 증식 또는 처분은 종회의 인준을 득하여 증식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제205조 (종단재정의 회계)

종단재정의 회계는 매년 11월 30일한 수립하여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6조 (간접재정의 정의)

간접재정은 각급 단체장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종단에서 처분의 권리가 없는 명의등록 재정을 말한다.

#### 제207조 (간접재정의 관리)

간접재정의 관리는 각급 단체장(창건주지 포함)의 주관 하에 운영하나 운영예산 편성과 결산은 총무원장에 서류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 제208조

간접재정의 증식 또는 처분은 각급 단체장의 결정에 의하나 그 결과를 총무원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9조 (간접재정의 회계)

간접재정의 회계는 매년 11월 30일한 수립하여 총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210조

이 법의 제정 및 개정, 정정, 폐지는 총무원장이 주관하고 종회의 인준사항에 대하여는 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장 포상 및 징계

### 제21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9장 각조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한다.

### 제212조

포상은 종정포상과 각급 단체장의 포상으로 나누어 한다.

### 제213조

징계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징계와 교구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징계로 나눈다.

### 제214조 (종정포상)

종단의 발전에 공로를 세웠거나 재산의 증여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공로를 세운 자는 종정의 이름으로 포상할 수 있다.

### 제215조 (종정포상의 종류)

종정포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훈장
- 기념메달
- 상패
- 상장
- 상품
- 법계승급

### 제216조 (시상방법)

각급 기관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상세히 적어 총무원장에 상신하고 총무원장은 그 경중을 가려  
적정한 사유로 인정되면 종정의 명이나 총무원장의 명의로 시상한다.

#### 제217조 (단체장의 포상)

각급 단체장은 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거나 종단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자를  
총무원장에 상신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18조 (포상의 종류)

단체장의 포상종류는 아래와 같다.

- 훈장
- 기념메달
- 상패
- 상장
- 상품
- 법계승급

#### 제219조 (시상방법)

각급 기관단체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상세히 적어 총무원장에게 상신하고 총무원장은 그 경중을  
가려 적정한 사유로 인정되면 총무원장의 명이나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시상한다.

#### 제2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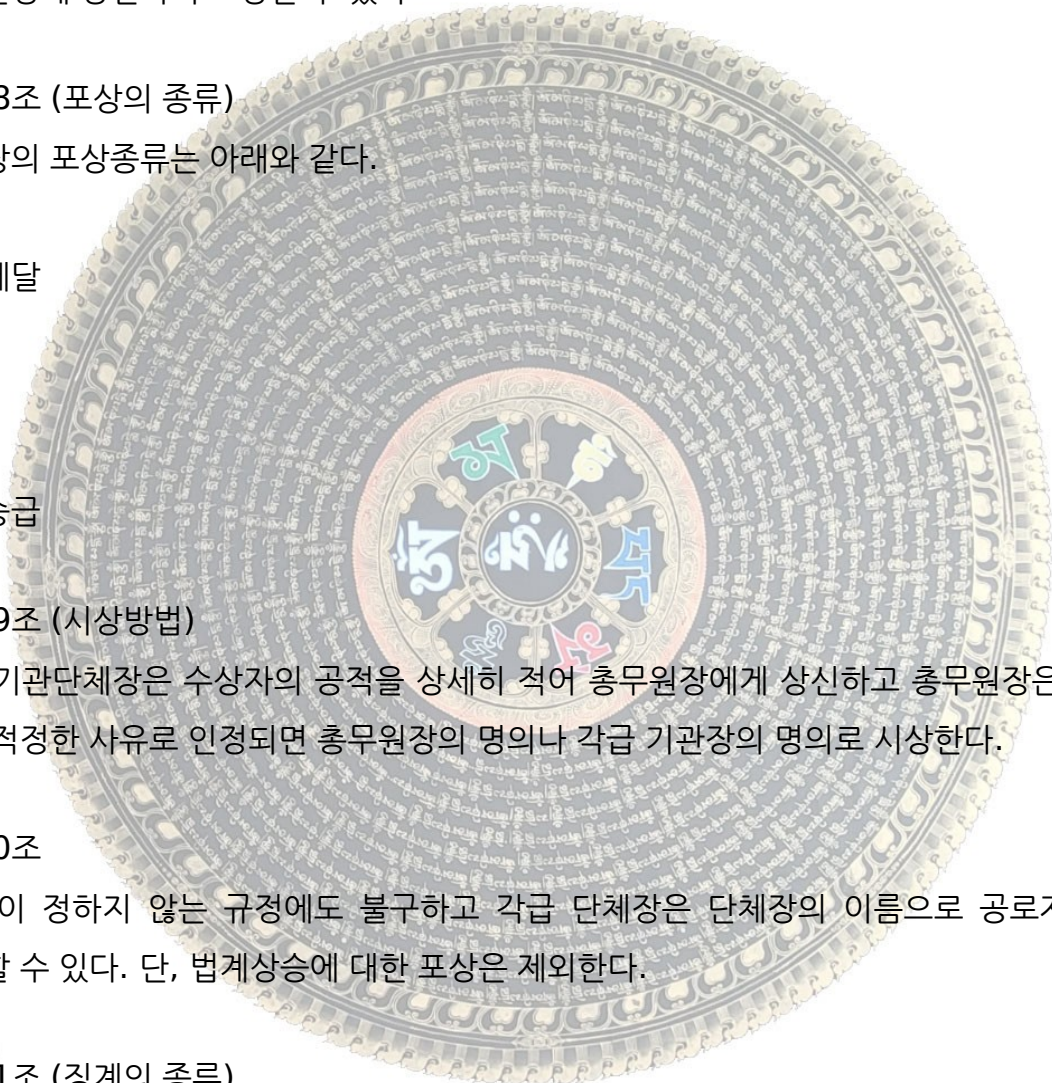
이 법이 정하지 않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 단체장은 단체장의 이름으로 공로자를 정하여  
시향할 수 있다. 단, 법계상승에 대한 포상은 제외한다.

#### 제221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체탈도첩
- 제적
- 공권정지
- 자격정지
- 법위감금
- 직무정지

#### 제222조 (징계방법)



사정기관은 각종 종단기관과 승려에 대한 관계 기관에 위반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해당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223조 (징계의 처리)

사정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접한 총무원 사정원 감사원 종회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징계의 등급을 정하여 처리한다. 이때 해당부서의 장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고한다.

#### 제224조 (징계제소)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그 결의 처리한 상급기관에 상소할 수 있다.

상급기관의 순서는 종정유시, 종회결의, 재심위원회, 초심위원회, 지휘권의 단체장 순으로 한다.

#### 제225조 (징계의 적용)

징계의 적용은 아래에 준한다.

체탈도첩 : 살인 및 전치 10주 이상의 폭행을 가한 자 또는 종단의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자

제적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법자, 종단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

공권정지 : 사회법에 의하여 입건되어 집행유예, 공금을 횡령한 자, 또는 사기 행각을 벌인 자.

자격정지 : 사회법에 의하여 입건되었거나 공갈, 협박 등으로 종단에 제소되었거나 중대한 해종행위를 저지른 자.

법위감금 : 승려의 품위를 잃고 진정된 자, 종단의 발전에 해종행위를 3회 이상 저지른 자.

직무정지 : 직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피하는 자, 종단을 비방하거나 해종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

#### 제226조

기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밝혀졌음에도 참회하지 않는 자는 경고, 면책 등의 징계를 감독권이 있는 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

### 제23장 종헌종법 정정 및 제정, 폐지법

#### 제227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20장 각 항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규정한다.

#### 제228조 (발의)

중헌중법의 개정, 정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장은 그 필요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총무원을 경유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제229조 (심의)

총무원은 경유된 안건을 접수받은 후 10일 이내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때 어떠한 경우라도 총무원장은 접수한 안건을 반려할 수 없다.

#### 제230조 (심의)

총회의장은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1조 (의결)

총회의장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결정하고 발의자에게 통보하고 중단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32조 (효력발생)

개정된 안건은 공고일 익일부터 그 효력을 유지한다.

#### 제233조

중헌중법이 정하는 규범에도 불구하고 중정은 그 유시를 통해 중헌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종단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중무행정의 마비 중단 존폐의 위기로 인정된 때에 한한다.

#### 제234조

전 조의 경우 중정의 종단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중단을 설치하고 총무원장을 임명 할 수 있다.

#### 제235조

제233조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정의 총회를 새로 구성하여 발생일 60일 이내에 새 중정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제24장 비구니원법

#### 제236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21장 각 항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 한다.

#### 제237조 (조직)

비구니원에 비구니원장을 두어 비구니원을 총괄하고 부원장, 비구니 부장, 총무국장, 재무부장, 교무부장을 둔다.

#### 제238조 (자격)

비구니원의 부서장 자격은 다음 항에 준한다.

원장 : 법납 30년, 연령 60세, 법위 대덕

부원장 : 법납 20년, 연령 55세, 법위 선덕

부장 : 법납 10년, 연령 40세, 법위 선덕

국장 : 법납 10년, 연령 35세, 비구니계 수지자

#### 제239조 (임기)

비구니원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240조 (수련원 및 강원)

비구니원은 여승들의 활동을 도모하고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수련원 및 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수련원장과 강원장은 비구니 원장이 제청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 제241조 (임명권)

비구니원의 원장은 비구니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총무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 제243조 (부원장 및 임원선출)

비구니 원장은 선출 즉시 부원장을 선임하고 부장, 국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 제244조

비구니회는 그 운영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때 선임 선출된 임원은 총무원에 보고한다.

#### 제245조

비구니원은 비구니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5장 승려신도의 복장

### 제246조 (종사복)

종사복장은 다음으로 규정한다.

평상복 - 바지 적삼 두루마기 (색상 : 재색)

의식복 - 황색 장삼, 적색 가사 도는 황색 가사

### 제247조 (비구 비구니복)

승려복은 다음으로 정한다.

평상복 - 바지 적삼 두루마기 (색상 : 재색)

의식복 - 황색 장삼에 적색 가사

### 제248조 (사미 사미니복)

사미 사미니의 복장은 다음으로 정한다.

평상복 -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색상 : 재색)

의식복 - 장삼(회색), 가사(밤색)

### 제249조 (포교사, 유발법사 의복)

사미승의 규정에 준한다.

### 제250조 (일반불자복-신도)

사미승의 복장에 준하나 가사 착용 불가

### 제25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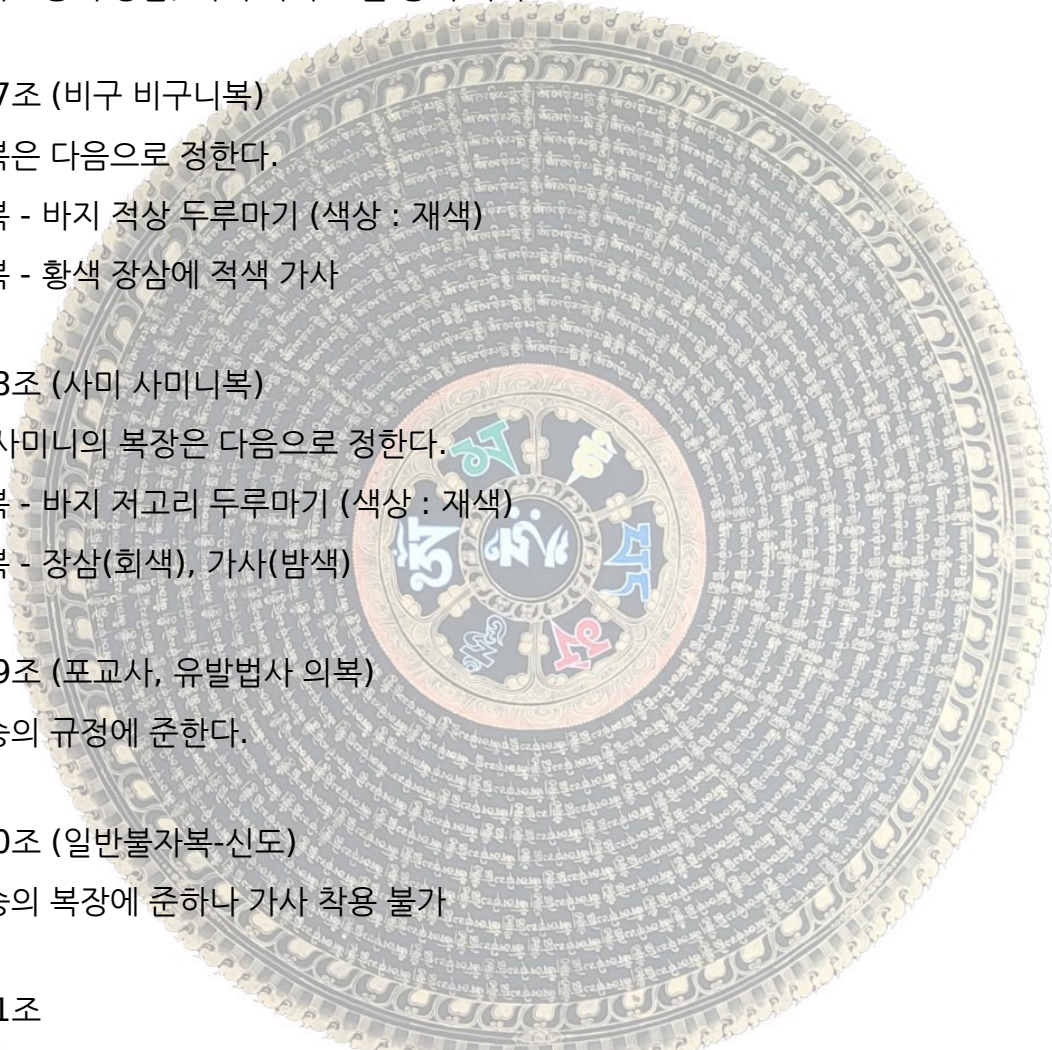
종헌종법의 규정하는바 일상생활에서는 제한치 않으나 합동법회나 공식 석상에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252조

의제는 각 신행단체에 따라 별도의 공용의제를 택할 수 있다.

## 제26장 사찰관리법

### 제253조 (사찰구분의 정의)



본종 사찰은 공사찰과 사설사암으로 구분하며 공사찰은 총무원에서 직접 출원한 자산과 종단에 기부한 사찰을 공사찰이라 하며, 그 외의 사찰은 사설사암이라 한다.

#### 제254조 (공공사찰의 명의등재정의)

공사찰은 반드시 종단명의로 사암의 명의로 법원의 등기부에 등재하고 등기권리증은 총무원 또는 당해 사암의 주지가 보관하되 등기부 등본은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5조 (공공사찰의 관등록)

본 종의 공공사찰은 각 관할관청에 관등록을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세무행정청에 고유번호를 득하여야 한다.

#### 제256조 (등기부권리증 및 정관관리)

공공사찰은 각 사암별로 정관을 만들어 보관하되 총무원에서 제공한 정관을 사용하거나 각 사암에서 제정 할 때는 총무원의 허가를 득하고 그 사본을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7조 (운영위원회)

각 사암이 공공사찰로서 관등록을 하며 정관을 제정할 때는 위원회 임원을 정하고 각 사암의 주지가 위원장이 되며 재산을 관리하고 주지의 유고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임을 정하고 총무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258조 (총무원 직접재산관리)

총무원에서 직접 출원한 자산으로 사설사암 및 교육원 등을 설립할 때는 총무원장이 대표자가 되어 종헌종법에 따라 관리하며 책임자를 임용할 때는 종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되 운영권은 당해 단체의 책임자가 가지고 재산 관리는 총무원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 제259조 (관리권자의 승계)

공공재산의 관리권자는 당연히 해당 사암의 주지가 하며 직접 재산 총무원명의 자산은 총무원장이 되며 직접재산의 경우 총무원장이 임기만료 또는 유고시 후임자가 승계하며 사암의 주지는 후임의 지명 또는 선출로서 사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원장의 임명동의서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때 임명 동의서 또는 허가는 주지 임명장으로 대체한다.

#### 제260조 (공공사찰의 분규시)

공공사찰의 사자상속 또는 위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총무원장이 조정신청을 거쳐 관리자를 정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총무원장 직권으로 후임자를 정할 수 있다.

### 제261조 (후임자의 정의)

공공사암의 당해 관리자가 사망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종단에 재적되어 있는 상좌 (운영위원) 중에서 사자 상속하여 속가의 친자라 하더라도 재적승려나 재정사암에서 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후임자가 될 수 없다.

### 제262조 (공공사찰의 증여시)

타인 및 단체 또는 사설사암에서 종단명의로 증여된 자산은 반드시 종단명의로 하되 이를 어기고 개인사유로 욕심낼 때는 관계 종법에도 불구하고 체탈도첩으로 징계한다.

### 제263조 (공공자산의 처분)

공공자산을 부득이 처분해야 할 때(공영개발에 편입 또는 종단의 특별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종회의 동의를 받아 종정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264조 (증여사찰의 창건주 권리)

재적승려나 기타의 증여자가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당해 자산의 운영위원회 선출자 또는 창건주의 지명으로 종신 또는 특정 기간 동안 관리자를 정하여 임명을 요청하면 총무원장은 그 임명요청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 제265조 (증여사찰의 처분)

재적승려가 본 종 재적 시에 증여한 사찰은 증여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증여자의 허락 없이 당해 자산을 총무원에서 처분하지 못한다.

### 제266조 (증여사찰의 용도)

증여자산으로 취득한 자산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종단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업에는 출원 내지 투자할 수 없다.

### 제267조 (증여받은 재산의 명의등록)

증여받은 자산이 국가가 지정하는 법에 의해 종단명의로 취득이 불가할 시 그 해당 관리자의 명의로 등록하되 반드시 후임자에게 이양 또는 양도한다는 공증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8조 (사자상속의 분한)

공공자산의 상속자가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유고시 그 대표권은 총무원에 이양해야 하며 창건주가 생전 시는 창건주의 뜻을 존중하여 후임을 정한다.

### 제269조 (사설사암의 등록)

사설사암을 종단에 명의등록하려면 종단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0조

사설사업의 주지는 임명일로부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71조 (사설사암의 권리)

사설사암 주지 또는 포교사는 국가에서 정하는 권리와 종단에서 정한 종헌종법에 의해 모든 권리를 부여받고 총무원은 그 권리를 보호하고 위호하여야 한다.

### 제272조 (사설사암의 주지)

사설사암의 주지는 당해사찰의 창건 내지 승계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주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제273조 (사자상속)

사설사암의 주지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자상속의 권리가 있으며 사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 제274조 (사설사암의 의무)

사설사암의 주지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종단이 정한 소정의 분담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 제275조 (세무회계)

사설사암이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득하고 세무에 관한 정산서를 교부할 시 세무서에 신고한 회계장부 사본 1부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6조 (사설사암의 처분)

사설사암은 원칙적으로 주지(창건주) 권리 하에 처분할 수 있으나 그 결과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7조 (탈종)

사설사암의 주지가 사찰의 매매 및 타 종단으로의 이적을 위해 탈종을 할 시에는 총무원에 사전 신고하고 총무원에서 발급받은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 증 등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278조 (주지소임의 상벌)

사설사임이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종단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을 따르지 않고 승려로서의 의무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을시 종헌종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27장 부칙

#### 제279조

이 종법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불신도 종법이라 칭한다.

#### 제280조(종단재정 관리법)

본 종단의 고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종단은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자를 정하여 운영한다. 본 종단은 고유재산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고유재산 출현자를 대표자로 하여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유지재산의 명의를 등재 관리한다.

본 종단 고유재산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본 종단의 각 원의 대표자가 당연직 이사로 등재한다.

본 재단 대표자는 최초 출현자의 유고시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승계 하고 종정의 재가로서 선임한다.

본 재산의 매매, 임대 등의 처분사항이 발생 시 이사회를 거쳐 종회에 상정하여 결의하고 종정의 인가로서 집행한다.

본 종단의 고유재산을 본 종단의 운영목적 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본 재단의 고유재산이 정부의 기획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었거나 종단 운영상 부득이 처분할 경우 본래의 목적사업에 준하는 곳에 필히 사용하여 한다.

제6항의 경우 그 사용 범위는 종회의 인준을 받아 종정의 재가로서 총무원장이 집행한다.

제7항의 경우 총무원장은 사업계획서 예산편성표를 작성하여 종단 소식지(인터넷 또는 종보 등)에 공개하여 종도의 여론을 수렴하여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0조

이 규범은 2023년 1월 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